

VISA Cash 회원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VISA Cash의 발행기관인 하나은행과 VISA Cash를 발급 받은 회원이 VISA Cash를 이용함에 있어 양자의 권리, 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ISA Cash"라 함은 하나은행과 브이캐시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자화폐란 IC (Integrated Circuit)칩이 내장된 카드에 전자기호형태의 화폐가치를 저장(이하 충전)하였다가 물품구매나 용역의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서 정하고 있는 선불카드의 형태를 취하는 현금 대체수단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VISA Cash 회원약관에 따라 하나은행에 VISA Cash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3. "가맹점"이란 VISA Cash 가맹점약관에 따라 가맹점가입을 신청하여 발행기관으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4. "기명카드"는 충전 연결계좌 또는 연결신용카드가 지정되어 있는 VISA Cash이며 "무기명카드"는 충전 연결계좌 또는 연결신용카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VISA Cash를 말합니다.
5. "제휴 포인트제도"는 하나은행이 제휴사와 협력하여 VISA Cash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시 포인트로 적립해 줌으로써,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VISA Cash로 재충전할 경우 기존 VISA Cash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VISA Cash 회원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단, 제휴 포인트제도는 하나은행이 지정한 특정상품에만 적용합니다.
6. "발행예치금"은 회원이 VISA Cash 발급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7. "타인계좌충전"이란 제 3자의 연결계좌로부터 회원 본인의 VISA Cash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발급)

- ① VISA Cash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나은행이 제시하는 소정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하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하나은행에서는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때 VISA Cash를 발급해 드리며, 이 때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카드의 경우 VISA Cash거래를 위한 연결계좌 또는 연결신용카드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VISA Cash를 발급 받은 때로 합니다.

제4조(비밀번호)

- ① 하나은행 연결계좌나 연결신용카드의 비밀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전자화폐의 비밀번호로 등록되며 사용 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타인계좌충전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회원의 VISA Cash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이 때 회원의 VISA Cash 비밀번호가 회원이 신청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면 하나은행은 타인계좌충전 연결계좌에서 약정 한도 내 신청금액을 출금처리하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이용)

- ① 회원은 VISA Cash 가맹점 어디에서나 VISA Cash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VISA Cash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VISA Cash의 잔액이 차감되어 거래내역이 기록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6조(충전)

-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의 지점, CD/ATM기, 인터넷뱅킹, POS기, E-Wallet, KIOSK, Mobile Handset 등 하나은행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정한 기기(이하 "충전기"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연결계좌 또는 연결신용카드로부터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VISA Cash에 충전 할 수 있습니다. 단, 충전은 충전기기의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충전기를 이용하여 VISA Cash에 충전 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충전시 제4조에 의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④ 하나은행은 VISA Cash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이 타인계좌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월간한도 등을 정하여 하나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이 제휴 포인트 충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원에게 충전되는 금액은 제휴 포인트에서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7조(환불)

- ① 하나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VISA Cash에 충전된 잔액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VISA Cash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 합니다. 단, 3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VISA Cash 실물회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회원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VISA Cash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회원이 VISA Cash를 제시하고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② VISA Cash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대금청구 및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잔액 확인 절차를 위해 회원의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환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잔액 최종 확인 후 즉시 환불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하나은행의 지점, CD/ATM기, 인터넷뱅킹, POS기, E-Wallet, KIOSK, Mobile Handset 등 에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수수료 등)

- ① 하나은행은 VISA Cash의 발급, 충전 또는 환불시 하나은행이 별도로 통보하는 발행예치금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발행예치금은 회원이VISA Cash를 하나은행에 반납하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다만, 제11조의 사유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발행 하는 경우 기존의 발행예치금은 하나은행에 귀속되며 다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충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은행은 회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비밀번호의 오류입력횟수 초과
- 2. VISA Cash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 3. VISA Cash가 사고 신고된 경우
- 4. 연결계좌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또는 연결신용카드 여신한도 부족
- 5. 연결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경우
- 6. 연결계좌 또는 연결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제휴 포인트제도)

- ① 하나은행은 상품에 따라 포인트 제공사와 제휴하여 제휴 포인트를 이용한 적립 및 충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포인트 적립은 하나은행에서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로 충전할 경우 VISA Cash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분실, 도난)

- ① 회원은 VISA Cash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하나은행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하나은행에 VISA Cash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당시 VISA Cash에 이미 충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하나은행은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VISA Cash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제12조(양도, 담보제공 및 타인소지 금지)

회원은 기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제13조(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제12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 2.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
 -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사고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4. VISA Cash의 발급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② VISA Cash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하나은행이 요청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하나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 ① 회원은 회원정보 및 연결계좌 또는 연결신용카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하나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자격정지·상실 및 탈퇴)

- ① 하나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통지하여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회원이 VISA Cash를 이용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하나은행이 회원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하나은행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VISA Cash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6조(약관변경 승인 등)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하나은행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